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치지침 시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 정책 등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령 등에서 시설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하여 지자체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설비로 보고, 판매용은 공작물이나 건축물 등으로 달리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을 시달하오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임의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어렵게 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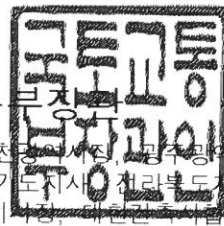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
- 건축물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용이나 판매용에 관계없이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함

구 분	태양광 발전설비 (건축설비)
면 적	·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이상 후퇴하여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탈락 및 유지관리 공간 등 고려
높 이	·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 이내
안 전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검토 확인 ·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끝.

국토교통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대한건축가협회장, 한국건축가협회장, 대한건축학회장, 새건축사협의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진해룡 시설사무관 조현환 과장 전결 2015. 11. 5. 김상문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1795 (2015. 11. 5.)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760 팩스번호 044-201-5574 / jstory@molit.go.kr / 대국민 공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3.0